

[서식 예] 답변서(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동시이행항변 2)

답 변 서

사건번호 2000가소0000 공사대금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는 원고 가 이 사건 건물을 수급 받아 완공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완공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사잔대금 청구에 대한 상환이행 판결을 구합니다.



2.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항변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함에 있어 건물을 설계도면과 달리 ◇◇로 시공하여 구조안전 측면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현재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어 이는 매우 중대한 하자이며, ◇◇만 한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는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근거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완공된 건물에 있는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의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사용하지 못 하여 건물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공사잔대금 청구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청구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사진(하자부분)

1. 을 제3호증 설계도면 사본

1. 을 제4호증 공사시방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00. 0. 0.

위 피고 🛇 🛇 (서명 또는 날인)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